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60
----------	------

제출연월일 : 2022년 3월 10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우리 교육청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공개심의회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 비율을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변경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2022. 1.27. ~ 2.16.)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별첨 4)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 (별첨 5)

○ 학생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 (별첨 6)

○ 관계법규 : (별첨 7)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2분의 1은” 을 “3분의 2는”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6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② (생략) ③심의회는 위원은 교육감 소속공무원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u>2분의 1</u>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한다. ④ ~ ⑦(생략)</p>	<p>제16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② (현행과같음) ③----- ----- ----- ----- -----3분의 2는----- -----. ④ ~ ⑦(현행과 같음)</p>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비용추계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총무과 주무관 배춘택 (02-3999-263)

【별첨 3】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의견 없음	

【별첨 4】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김재열
입안주관부서	총무과	통보일	2022. 2. 10.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안 제16조	-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우리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전문가 비율 확대를 정한 것으로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원안동의”	

【별첨 5】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2A서울교육002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배춘택	전화번호	02-399-926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김소영	전화번호	02-399-9675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2년 01월 27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2년 02월 03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2022년 02월 07일</p>				

【별첨 6】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총무과	담당자	직급		성명	배춘택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기획홍보소위원회	고태훈, 곽민재, 권정우, 김희진, 노희창, 송지은, 정진권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	<p>- 개정 내용이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권고사항 없음 의견임.</p>					<p>원안동의 (권고사항 없음)</p>

관계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3.] [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 하되, 그 중 3분의 2는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개 정 전	개 정 후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u>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 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u>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 ⑥(생략)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 ② (생략)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 하되, 그 중 <u>3분의 2는 해당 국가 기관 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u>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 ⑥(생략)